

부모와 자녀의 특수 교육권

장애인교육법 B장 및

캘리포니아 교육법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

2016년 10월 개정

참고: 학군이라는 용어는 본 문서에서 자녀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든 공교육 기관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평가라는 용어는 평가 또는 테스트를 의미하는 데 사용됩니다. 연방법과 주법은 이 통지의 마지막 페이지의 용어집에 설명되어 있는 영어 약어를 사용하여 이 통지에서 인용됩니다.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란 무엇입니까?

이 정보는 만 3세부터 만 21세 사이 장애 아동의 부모, 법적 보호자, 위탁 부모, 만 18세가 된 학생인 귀하에게 교육권이나 절차적 보호조치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절차적 보호 조치의 통지는 장애인 교육법(영어로는 IDEA라고 함)에 따라 필요하며, 반드시 다음 사항에 따라 당신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사본을 요청할 때
- 자녀가 처음으로 특수교육 평가를 치를 때
- 자녀 평가를 위한 평가 계획을 받을 때마다
- 첫 번째 주 또는 학년도 중 적법 절차 불만 접수, 그리고
- 배치 변경을 구성하는 제거 결정이 내려진 경우

(20 USC 1415[d]; 34 CFR 300.504; EC 56301[d] [2], EC 56321, 및 56341.1[g] [1])

장애 교육법(IDEA)이란 무엇입니까?

IDEA는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영어로 FAPE라고 함)을 제공해야 하는 연방법입니다. 적절한 무상 공교육이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영어로 IEP라고 함)에 설명된 대로 제공되고 자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공공 감독 하에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귀하에게는 자녀의 특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의사 결정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귀하는 자격(적격), 평가 또는 자녀의 FAPE 및 그와 관련된 기타 문제와 관련한 교육적 배치에 대한 IEP 팀 회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20 USC 1414[d] [1]B-[d][1][D]; 34 CFR 300.321; EC 56341[b], 56343[c])

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지역 교육 기관(LEA)은 IEP 개발에 참여하고 IEP 팀 회의 진행 상황을 전자적으로 녹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적어도 회의 24시간 전에 부모 또는 보호자는 IEP 팀원에게 회의록 작성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가 LEA가 IEP 회의를 녹음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녹음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권한에는 모든 프로그램 옵션을 포함한 FAPE의 가용성에 대한 정보와 공개 및 비공개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사용 가능한 대체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20 USC 1401[3], 1412[a][3]; 34 CFR 300.111; EC 56301, 56341.1[g][1], 및 56506)

어디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녀의 교육에 대해 고민이 있을 때는 자녀의 교사나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자녀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보이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군 또는 특수 교육 지역 계획 구역(SELPA)의 직원은 자녀의 교육, 권리 및 절차적 보호 조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민거리가 있을 때, 이러한 비공식적인 대화는 종종 문제를 해결하고 열린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육자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개발된 캘리포니아 학부모 단체(가족 권한 부여 센터 및 학부모 교육 기관) 중 한 곳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직의 연락처 정보는 CDE 특별 교육 California Parent Organization 웹 페이지 <http://www.cde.ca.gov/sp/se/qa/caprntorg.a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보호 조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가 이 문서의 끝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 아이가 청각장애, 난청, 시각장애, 약시, 시각-청각장애일 경우 어떡하나요?

주 특수학교는 세 가지 시설인 프리몬트와 리버사이드의 캘리포니아 청각장애인 학교와 프리몬트의 캘리포니아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각각 청각장애인, 난청, 시각장애인, 약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거 및 주간 학교 프로그램은 주립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유아기부터 21세까지의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캘리포니아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5살에서 21살까지의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주립 특수학교는 또한 평가 서비스와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 특수 학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교육부(CDE) 웹 사이트 <http://www.cde.ca.gov/sp/ss/> 를 방문하거나 자녀의 IEP 팀 구성원에게 자세한 정보를 요청해주세요.

통지, 동의, 평가, 대리 부모 임명 및 기록에 대한 접근

사전 서면 통지

통지는 언제 필요합니까?

이 통지는 학군이 자녀에 대한 식별, 평가 또는 교육 장소의 변경이나 필요한 적절한 무상 공교육의 제공을 제안하거나 거부할 때 제공되어야 합니다. (20 USC 1415[b][3] 및 (4), 1415[c][1], 1414[b][1]; 34 CFR 300.503; EC 56329 및 56506[a])

학군에서는 평가 요청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평가 계획서를 통해 자녀에 대한 평가 제안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는 가능한 한, 귀하의 모국어나 다른 의사소통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34 CFR 300.304; EC 56321)

안내문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사전 서면 통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학군이 제안하거나 거부한 조치에 대한 설명
2. 그 조치가 제안되거나 거부된 이유에 대한 설명
3. 제안되거나 거부된 조치에 대한 근거로 사용된 각 평가 절차, 기록 또는 보고에 대한 설명
4. 장애 아동의 부모가 절차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진술
5. 이 부분의 조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모가 연락할 수 있는 출처
6. IEP 팀이 고려했던 기타 옵션과 해당 옵션이 거부된 이유에 대한 설명 및
7. 제안되거나 거부된 조치와 관련된 기타 요인에 대한 설명. (20 USC 1415[b][3] 및 [4], 1415[c][1], 1414[b][1]; 34 CFR 300.503)

보호자의 동의

평가 승인이 필요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귀하는 자녀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를 언급할 권한이 있습니다. 귀하는 자녀의 첫 번째 특별 교육 평가가 진행되기 전에 정보에 입각한 사전 서면 동의를 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제안된 평가 계획을 수령한 후 최소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평가는 동의서를 받는 즉시 시작할 수 있으며, 귀하의 동의 후 60 일 이내에 완료되고 IEP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귀하는 학군이 자녀에게 특별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사전 서면 동의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때의 절차는 무엇입니까?

귀하가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거나 동의 제공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학군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초기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서비스 개시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군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적법 절차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귀하가 자녀에 대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서면으로는 동의했지만 IEP의 모든 구성 요소에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는 지체 없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학군이 자녀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특수교육 프로그램 구성요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적절한 절차 심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적절한 절차 심리가 열린 경우, 심리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어야 합니다.

재평가의 경우, 학군은 여러분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기록해야 합니다. 응답하지 않을 경우 학군은 본인의 동의 없이 재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 USC 1414[a][1][D] 및 1414[c]; 34 CFR 300.300; EC 56506[e], 56321[c] 및 [d], 및 56346).

언제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제공 이후 자녀의 부모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에 공립 교육 기관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자녀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에 34 *CFR* 300.503에 따라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2. 300 34 *CFR* E에 따른 절차(34 *CFR* 300.506에 따른 중재 절차 또는 34 *CFR* 300.507에서 300.516에 따른 적법한 절차 포함)를 사용하여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합의나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자녀에게 추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 (FAPE)을 제공해야하는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특별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추가 제공을 위해 자녀를 위한 34 *CFR* 300.320 및 300.324에 따라 IEP 회의를 소집하거나 IEP를 개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34 *CFR* 300.9 (c)(3)에 따라, 자녀가 특수 교육 서비스를 처음 제공받은 후 부모가 자녀의 특수 교육 서비스 수령에 대한 서면 동의를 취소하는 경우, 공교육 기관은 동의 철회로 인해 자녀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수령에 대한 학적을 삭제하기 위해 아동의 교육 기록을 수정해야 합니다.

위탁 부모 임명

부모를 신원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군은 부모의 신원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를 대신하여 위탁 부모 역할을 하는 개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자녀가 무연고 노숙 청소년이거나, 주 복지 및 기관 법에 따라 판결 받은 부양 가족 또는 법원의 보호 대상자이고 특수 교육에 회부되었거나 이미 IEP가 있는 경우 위탁 부모가 임명 될 수도 있습니다. (20 *USC* 1415[b][2] ; 34 *CFR* 300.519; *EC* 56050; *GC* 7579.5 및 7579.6)

공정 평가

우리 아이는 특수교육 서비스에 의해 어떻게 평가됩니까?

귀하는 장애 여부가 의심되는 모든 분야에서 당신의 자녀를 평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평가 및 배치에 사용되는 자료와 절차는 인종, 문화 또는 성적으로 차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테스트를 자녀의 모국어 또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며, 제공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명백히 가능하지 않는 한, 아이가 알고 있고 학업, 발달 및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형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도 자녀의 자격을 결정하고 FAPE를 개발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20 USC 1414[b][1]-[3], 1412[a][6][B]; 34 CFR 300.304; EC 56001[j] 및 56320)

독립 교육 평가

우리 아이가 지역구 비용으로 독자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귀하는 학군이 실시하는 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금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자녀에 대한 독립적 교육평가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는 공공기관이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평가를 실시할 때마다 공금으로 하나의 독립적 교육평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군은 독자적 교육 평가에 대한 귀하의 요청에 응해야 하며, 독자적 교육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군이 그 학군의 평가가 적절하다고 보고 독립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군은 적법한 절차 심리를 요청해 해당 평가가 적절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학군의 의견이 우세해도 여전히 귀하는 독립적인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공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IEP팀은 독립적인 평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학군 평가 절차를 통해 학급 내 학생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학군이 평가 도중 자신의 교실에서 자녀를 관찰하거나, 학군이 자녀의 관찰을 허용했다면, 독립적인 교육 평가를 실시하는 개인도 교실에서 아이를 관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학군이 자녀에게 새로운 학교 환경을 제안하고 독립적인 교육 평가가 실시되는 경우, 독립 평가자가 제안된 새로운 환경을 준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20 USC 1415[b][1] 및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

CDE, T07-037, 영어, Arial 글꼴

페이지 7 / 19

[d][2][A]; 34 *CFR* 300.502; *EC* 56329[b] 및 [c])

교육 기록에 대한 접근

우리 아이의 교육 기록을 살펴봐도 될까요?

귀하는 자녀의 IEP에 대한 회의 전이나 적법한 절차 심리 전을 포함하여 자녀의 모든 교육 기록을 지체 없이 검사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청 시 학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이 이루어진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기록 및 사본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EC 49060, 56043[n], 56501[b][3], 및 56504)

분쟁 해결 방법

적법한 절차 심리

적법한 절차 심리는 언제 가능합니까?

귀하는 자녀의 식별, 평가 및 교육 배치 또는 FAPE 제공과 관련하여 공정한 적법한 절차 심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 심리에 대한 요청은 적법한 절차 불만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주장되는 조치에 대해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20 USC 1415[b][6]; 34 CFR 300.507; EC 56501 및 56505[i])

조정 및 대체 분쟁 해결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나 대안을 요청해도 될까요?

조정 요청은 적법한 절차 심리 요청이 있기 전 또는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 심리보다 덜 적대적인 조정이나 대체분쟁해결(ADR)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학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ADR 및 조정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인 방법이며 적법한 절차 심리에 대한 권리를 지연시키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전 심리 조정 회의는 무엇입니까?

귀하는 적법한 절차 심리를 요청하기 전에 조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는 자녀 또는 FAPE의 식별, 평가 또는 교육적 배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적대적 방식으로 수행되는 비공식 절차입니다.

사전 심리 조정회의에는 학부모 또는 학군 대표가 동행·자문할 수 있으며, 회의 전·후에 변호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리 전 조정회의를 요청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 심리를 요청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사전 청문조정회의 모든 요청은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교육감에게 서면 요구를 하여 사전 심리 조정회의를 개시하는 당사자는 그 요구가 제기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그 청구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전 심리 조정회의는 조정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정을 잡고, 조정요청서가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쌍방이 시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결의안이 도출된 경우, 당사자들은 결의안에 명시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면 합의를 이행해야 합니다. 조정 과정 중 모든 논의는 기밀로 처리되어야 한다. 모든 사전 심리 조정회의는 적시에 개최하고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쟁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정회의를 요청한 당사자는 적법한 절차 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C 56500.3 및 56503)

적법한 절차 권한

내 적법한 절차 권한은 무엇입니까?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습니다:

1. 특수교육 및 행정 심리를 관할하는 법률에 정통한 사람 앞에 국가 차원에서 공정하고 공정한 행정 심리를 실시합니다.(20 USC 1415[f][1][A], 1415[f][3][A]-[D]; 34 CFR 300.511; EC 56501[b][4])
2. 장애 아동에 대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 및/또는 개인과 동행하여 조언 받는다.(EC 56505 [e][1])
3. 증거, 서면 주장 및 구두 주장 제시 (EC 56505[e][2])
4. 대면, 대질 조사 및 증인 출석 요구 (EC 56505[e][3])

5. 서면 또는 부모의 선택에 따라 사실 및 결정의 결과를 포함하여 심리에 대한 전자적 구두 기록을 받습니다 (*EC 56505[e][4]*)
6. 자녀가 심리에 출석하도록 합니다 (*EC 56501[c][1]*)
7. 심리를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합니다 (*EC 56501[c][2]*)
8. 해당 날짜까지 완료된 평가 및 권고 사항을 포함한 모든 문서의 사본과 증인 목록 및 일반 증언 영역을 심리(5 영업일 기준) 전에 수령합니다 (*EC 56505[e][7]* 및 *56043[v]*)
9. 청문회 최소 10일 전에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쟁점 및 제안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통지를 받습니다 (*EC 56505[e][6]*)
10. 통역사를 제공받습니다 (*CCR 3082[d]*)
11. 청문회 일정 연장 요청 (*EC 56505[f][3]*)
12. 적법한 절차 심리 기간 중 언제든지 조정 회의를 개최합니다 (*EC 56501[b][2]*) 그리고
13. 청문회 최소 10일 전에 상대방이 변호사에 의해 대표될 의사가 있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EC 56507[a]*). (*20 USC 1415[e]*; *34 CFR 300.506, 300.508, 300.512* 및 *300.515*)

적법 절차에 대한 불만 신고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는 적법한 절차 심리를 위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담당자가 요청 받을 시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자녀의 이름
2. 자녀의 거주지 주소
3.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이름
4. 무주택 자녀의 경우 자녀에 대한 연락처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이름 및
5. 문제와 관련된 사실 및 제안된 문제 해결 방법을 포함하여 문제의 본질에 대한 설명

연방법과 주법은 적법한 절차 심리를 신청하는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서면 요청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 USC 1415[b][7], 1415[c][2]; 34 CFR 300.508; EC 56502[c][1])

적법 절차 심리를 신청하기 전, 학군은 확인 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있는 IEP 팀의 관련 구성원과 학부모 간의 회의인 결의회를 소집하여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20 USC 1415[f][1][B]; 34 CFR 300.510)

결의 회의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결의 회의는 학부모의 적법한 절차 청문 요청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소집 되어야 합니다

결의 회의는 결정권을 가진 학군 대표를 포함하되 학부모가 변호인을 동반하지 않는 한 학군 변호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부모는 적법한 절차 심리 문제 및 적법한 절차 심리 요청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군이 서면으로 회의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결의 회의는 필요 없습니다. 학군이 30일 이내에 적법한 절차 심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적법한 절차 심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의안이 도출되면 당사자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20 USC 1415[f][1][B]; 34 CFR 300.510)

진행중에 제 자녀의 교육 위치가 변경됩니까?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와 연관된 자녀는 귀하와 학군이 다른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한 현재의 교육 위치에 머물러야 합니다.

자녀가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공립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20 *USC* 1415[jj]; 34 *CFR* 300.518; *EC* 56505[d])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까?

청문회 결정은 최종적이며 양측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최종 결정 후 90일 이내에 주 또는 연방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심리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20 USC 1415[i][2] and [3][A], 1415[i]; 34 CFR 300.516; EC 56505[h] and [k], EC 56043[w])

변호사 수임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적법한 절차 변론에 관한 어떤 행동이나 절차에서, 법원은 재량에 따라, 귀하가 변론에서 우세한 당사자라면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로서 귀하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는 행정 심리가 종료된 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 USC 1415[i][3][B]-[G]; 34 CFR 300.517; EC 56507[b])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임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법원이 귀하가 불합리하게 논쟁의 최종 해결을 지연시켰다고 판결한 경우
2. 변호사의 시간당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동등한 기술, 평판 및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 비율을 초과한 경우
3. 제공되는 시간과 법률 서비스 시간이 초과되었거나
4. 귀하의 변호사가 적법한 절차 요청 통지에 적절한 정보를 학군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다만 법원이 국가나 학군이 조치 또는 소송의 최종 결의나 절차를 불합리하게 지연시켰거나 이 조항에 위반사항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감면되지 않음. (20 USC 1415[i][3][B]-[G]; 34 CFR 300.517)

IEP 팀 회의와 관련된 변호사 수임료는 적법한 심리 절차 또는 사법 처리의 결과로 IEP 팀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한 부과될 수 없음. 변론 시작 10일 전(10일)에 구·공공기관의 합리적인 정산 제안을 거절하고 변론 결정이 정산 제안보다 유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변호사 수임료가 거부될 수 있음. (20 USC 1415[i][3][B]-[G]; 34 CFR 300.517)

자세한 정보를 얻거나 중재 또는 적법 절차 심리를 신청하려면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행정 심리 사무실

받는 이: 특수교육과

2349 게이트웨이 오크스 드라이브, 스위트 200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33-4231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

CDE, T07-037, 영어, Arial 글꼴

페이지 14 / 19

(916) 263-0880
FAX (916) 263-0890

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규율 및 배정 절차

학교 규율과 대안적 중간 교육 환경

제 자녀가 정학 당하거나 퇴학당할 수도 있나요?

학교 직원은 행동강령을 위반한 장애아동이 다음과 같이 변경 배정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때 사례별로 고유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 적절한 중간 대안교육 환경, 또 다른 설정 또는 10일 이내 연속 등교 정지 및
- 별도의 부정행위 발생에 대한 동일 학년 연속 등교일 수 10일 이내 추가 정학

10일 이상 정학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장애아동이 같은 학년 10일간 현재 위치에서 정학 당한 후, 그 기간동안 공교육 기관은 자녀가 일반 교육 커리큘럼에 계속 참여하고 자녀의 IEP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는 적절하게 기능적 행동 평가와 행동 개입 서비스 및 수정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들은 행동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자녀의 정학이 10일을 초과할 경우, IEP 팀 회의를 개최하여 자녀의 위법행위가 장애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IEP 팀 회의는 가능한 한 즉시 또는 이러한 유형의 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학군이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부모로서 귀하는 이 IEP 팀의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초대 받습니다. 학군은 위법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평가 계획을 개발해야 할 수도 있고, 자녀에게 행동 중재 계획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계획을 검토하고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IEP 팀이 위법 행위가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IEP 팀이 위법 행위가 자녀의 장애 탓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면 학군은 장애가 없는 다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퇴학과 같은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0 USC 1415[k][1] 및 [7]; 34 CFR 300.530)

IEP 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속한 적법한 심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리는 요청한 날짜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20 USC 1415[k][2]; 34 CFR 300.531[c])

학군은 환경에 관계없이 자녀에게 FAPE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대안 교육 환경은 자녀가 일반 커리큘럼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IEP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서비스와 수정 사항의 지속을 보장해야 합니다. (34 CFR 300.530; EC 48915.5[b])

사립학교에 다니는 자녀

학부모가 사립 학교에 배치 된 학생이 공립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사립 학교에 등록한 자녀는 공립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군은 사립학교 및 학부모와 협의하여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제공될 서비스를 결정해야 합니다. 비록 학군이 장애 학생들에게 FAPE를 제공해야 하는 분명한 책임이 있지만, 학부모가 사립학교에 배정했을 때 그 자녀들은 FAPE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특별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20 USC 1415[a][10][A]; 34 CFR 300.137 and 300.138; EC 56173)

이전에 학군의 권한 하에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은 예외적 필요가 있는 개인의 부모가 지역 교육 기관의 동의 또는 추천 없이 해당 자녀를 사립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등록한 경우, 해당 학군에서 FAPE를 제공한 경우 특수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 또는 적법 절차 심리 담당자는 해당 학군에서 FAPE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해당 학군이 특수 교육 및 사립 학교 비용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립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등록하기 전의 사립학교 배정이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20 USC 1412[a][10][C]; 34 CFR 300.148; EC 56175)

환급 금액이 줄거나 거부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법원 또는 심리 담당자가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퇴학 시키기 전에 학군의 통보를 받은 즉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또한 귀하는 학군이 제안한 특수교육 배치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공금을 들여 자녀를 사립학교에 입학시키려는 우려와 의도를 진술한 경우.

귀하는 다음 중 한 가지 사항을 학군에 통지해야 합니다:

- 가장 최근에 개최된 IEP 팀 회의에서는 자녀가 공립학교에서 나오기 전에 참석했거나
- 영업일 기준 10일(휴일 포함) 이상 학군에 서면으로 자녀가 공립학교에서 나오기 전에 참석했다는 사실. (20 USC 1412[a][10][C]; 34 CFR 300.148; EC 56176)

환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거부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학군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원 또는 심리 담당자는 환급 금액을 줄이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학교에서 귀하가 통지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경우
 - 귀하가 본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서 사본을 수령하지 못했거나 해당 지역에 통지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통지 받지 못한 경우
 - 통지를 한 것이 자녀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문맹과 영어로 글을 쓸 수 없어서 통지를 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 통지 행위가 자녀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0 USC 1412[a][10][C]; 34 CFR 300.148; EC 56177)

주 민원 절차

주 규정 준수에 대한 불만 신고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학군이 연방 또는 주 특별 교육법 또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주 규정 준수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서면 불만 사항은 연방 및 주 특별 교육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항을 하나 이상 명시해야 합니다. 이 위반은 캘리포니아 교육부(CDE)가 불만 사항을 접수하기 1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CDE에 국가 준수 불만 사항을 제기하는 동시에 해당 불만 사항의 사본을 학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34 CFR 300.151–153; 5 CCR 4600)

연방 및 주 특수 교육법 또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불만 사항은 다음 주소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
특수교육과
절차적 보호 조치 참조 서비스
1430 N 스트리트, 스위트 2401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5814

연방 또는 주 특수 교육 법률 또는 규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와 관련된 불만사항은 해당 지역의 일관된 불만사항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불만 신고 방법 등 분쟁 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CDE, 특수 교육부, 절차적 안전조치 의뢰 서비스 센터에 전화 (800) 926-0648, 팩스 916-327-1944 또는 CDE 웹 사이트 <http://www.cde.ca.gov/sp/se>로 문의하십시오.

이 통지에 사용 된 약어 용어집

ADR 대체 분쟁 해결

CFR: 연방 규정집

EC 캘리포니아 교육법

적절한 무상 공교육

IDEA 장애인 교육법

IEP 개별 교육 프로그램

OAH: 행정 심리 사무실

SELPA: 특수교육 계획 지역

USC: 미국 법전